

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테니스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

1. 제안이유

금천구테니스협회(회장 우성만)에서 수탁 운영중인 독산테니스장이 2022. 8. 31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테니스장 운영을 위해 그간의 사업성과와 향후계획 등 운영능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재계약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 추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시설개요 및 위탁현황

시 설 명	소재지	시설규모	위탁기관	위탁기간
독산테니스장	독산로54길 288	◦연면적 : 5,080m ² ◦테니스 코트 6면 관리사무실2동 화장실	금천구테니스협회 (회장:우성만)	19.9.1.~22.8.31

나. 위탁업무

- 1) 독산테니스장 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
- 2) 지역 주민들을 위한 테니스 프로그램 운영

다. 수탁기관 선정방법 : 적격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로 재계약 여부 결정
(평가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 처리)

라. 재계약 위탁기간 : 2022. 9. 1. ~ 2025. 8. 31.(3년)

마. 위 탁 료 : 13,687,000원

3.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필요성

- 가. 전문지식을 지닌 민간단체를 통해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제공 및 테니스 활성화 기여 등 테니스장의 체계적·안정적 관리
- 나. 테니스장 유지관리와 이용자의 안전 및 만족도 향상 등 책임감 있는 운영을 위해 기존 수탁업체와의 재계약을 통해 운영의 전문성 및 체계성 제고

4. 관계법령

- 가.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
- 나.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, 제4조의2, 제4조의3
- 다.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21조

관계법령

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조례

제14조(위탁관리)

- ① 구청장은 문화체육시설의 운영·관리를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
- ②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금천구사무의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.

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4조(민간위탁사무의 기준)

- ① 법령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 <개정 2016.7.18>
 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 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 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<개정 2016.7.18>
 4.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<개정 2016.7.18.>
-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
 1.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
 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 3. 경제적 효율성
 4.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
 5. 성과 측정의 용이성
 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 7.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

제4조의2(민간위탁사무의 내용)

제4조제1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아동·청소년 등 복지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
2. 교육·도서관·체육·공원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

제4조의3(구의회 동의 및 보고)

- ① 구청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(이하 “구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다만,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한다.
-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 1. 민간위탁사무의 명칭
 2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
 3. 민간위탁사무 또는 민간위탁시설 내용
 4. 민간위탁 기간
 5. 수탁자 선정방식
 6.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사전 검토 결과

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

제21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
-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법 제27조제4항 및 제5항,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·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·연간사용료·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.
-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·징수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·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,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.